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980
----------	-------

발의연월일 : 2025. 8. 5.

발 의 자 : 조인철 · 허성무 · 안도걸
한정애 · 장종태 · 조계원
주철현 · 서천호 · 이건태
복기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고 지원과 각종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음.

하지만 재난이 발생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해 결국, 국고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행정안전부령) 등에서 피해조사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금액 산정 시 주택, 농림

시설, 축산물 증식 시설 등 시설물 중심으로 포함되고 농작물, 산림작물 등의 피해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임.

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금액 산정에 농작물·산림작물·가축 등의 피해를 포함시키고, 현재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6항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규모 산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그 산정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피해를 포함시켜야 한다.

1. 주택
2. 농경지 및 염전
3. 농림시설
4. 축산물 증식시설
5. 어선과 어망·어구
6. 수산물 증식·양식 시설
7. 공공시설
8.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수산물
9.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규모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재난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 ⑤ (생 략) <u><신 설></u>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규모 산정 기 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그 산정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피해를 포함시켜야 한 다.</u> <u>1. 주택</u> <u>2. 농경지 및 염전</u> <u>3. 농림시설</u> <u>4. 축산물 증식시설</u> <u>5. 어선과 어망·어구</u> <u>6. 수산물 증식·양식 시설</u> <u>7. 공공시설</u> <u>8.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수 산물</u> <u>9.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u>